

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공고

2022년도 공용 완속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. 5. 2.

한 국 환 경 공 단

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공용완속충전기 설치금액에 대한 민간보조지원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추진
- 사업예산 : 총 605억원

2. 지원대상

- 공동주택, 사업장,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·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

3. 신청자격

-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

-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, 운영, 유지보수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·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-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(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에 한함)에 대하여 OCA(Open Charge Alliance)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.6(OCPP 1.6)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

4.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

-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

< '22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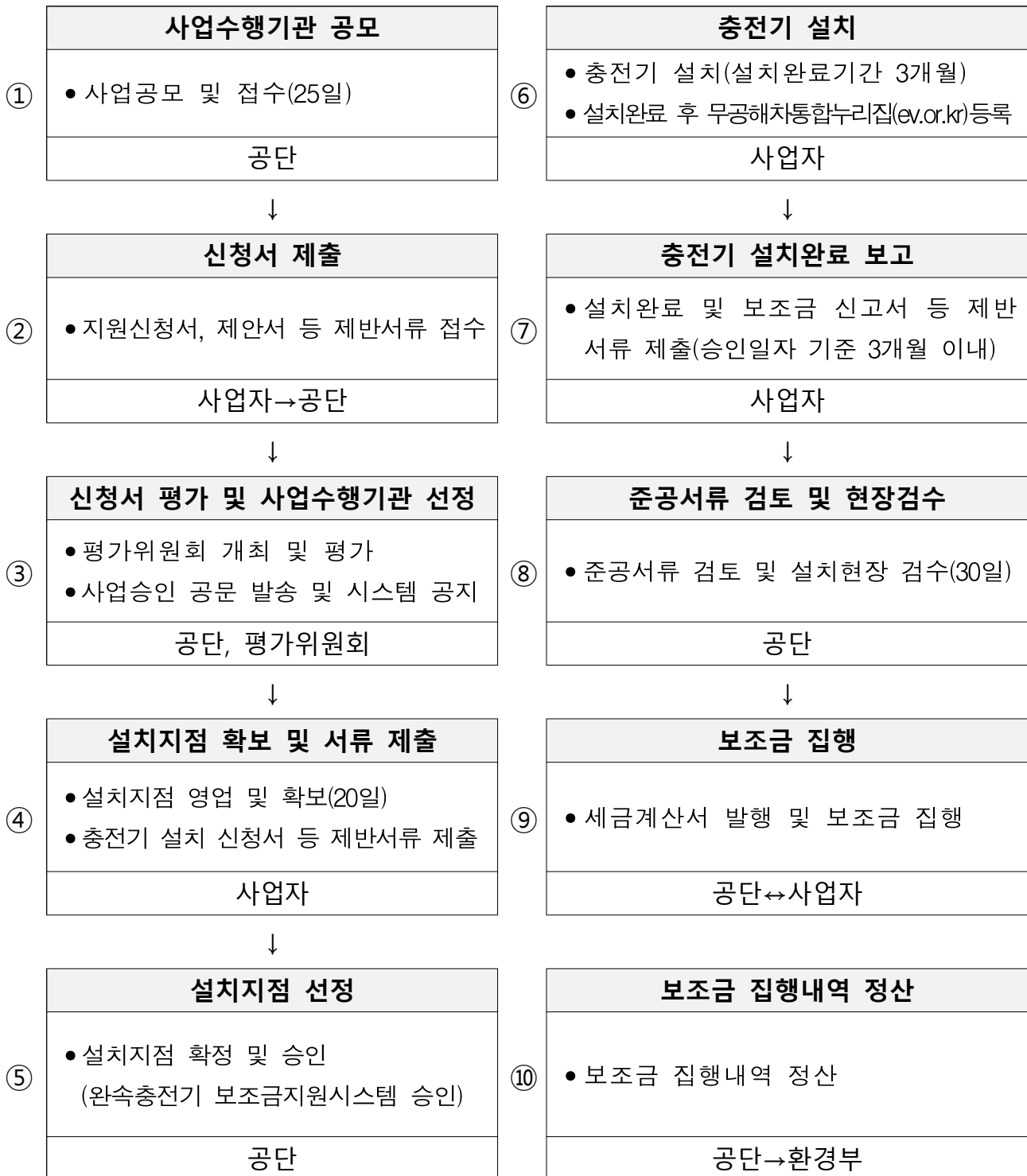
(단위: 만원)

구분		1기	2~5기	6기 이상	
완속충전기 (C타입)	AC	11kW이상	180	160	140
		7kW이상~11kW미만	160	140	120
키오스크 충전기		160(2기)			
전력분배형 충전기(7kW)		130(2기)			
과금형콘센트		40			

- ※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,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함
- ※ 키오스크 형식의 완속충전기(C 타입)는 기본 2기(보조금 160만원)을 지원하며, 1기 추가 시 추가 보조금 80만원을 지원함
- ※ 전력분배형 충전기(7kW)는 최대 2기까지만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, 기본 2기에 130만원을 지원함
- ※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. 단,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콘센트 운영 사업 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,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
- ※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,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콘센트만 설치 가능
- ※ DC 20kW 이상 충전기 보조금은 제품원가, 설치공사비 등 충분한 자료 확보 후 확정

5. 추진절차 및 평가

○ 추진 절차



* 평가·선정·검수 일정 등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평가방법

1) 사업수행기관 평가(서면평가)

-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최대 25개 업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
 - * 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,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
 - ** 사업수행기관의 운영시스템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(ev.or.kr)에 충전소 위치, 상태정보 등을 연계 가능하여야 하며, 최종 연계가능 확인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최종 등록 (세부 연계정보는 공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),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
-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항목에 대해 우선하여 업체의 순위를 결정
 - ① 고객지원 및 운영관리 → ②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→ ③ 사업수행계획 → ④ 운영시스템

2) 설치지점 선정(사업수행기관 선정 후) 기준

-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평가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물량 조정
- 상반기 보조사업 신청물량 중 승인일 이후 3개월 이내 준공하지 못한 충전기는 취소됨에 유의하여, 사업수행기관은 설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
 - * 평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「2022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지침」 참고
 - ** 사업수행기관은 준공기간 미준수로 인해 설치물량에서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, 취소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에 있음

6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'22. 5. 2.(월) ~ '22. 5. 27.(금) 18:00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goev@keco.or.kr)
- 사업수행기관선정 발표: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사업자 공문 발송

7. 제출서류

○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 지원 신청서 및 아래 각 호의 첨부서류

- ① 사업수행기관 지원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- ② 사업수행기관 신청 제안서[별지 제2호 참고] 및 조건표[별지 제3호서식]
* 제안서는 공단 제출용 1부(기명), 평가용 1부(무기명), 10페이지 내외의 제안서 요약본(무기명) 1부를 파일(PDF)로 제출,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
- ③ 사업자등록증, 전기신사업자 등록증
-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(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)
-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)
※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
- ⑥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
- ⑦ 충전기 사양(모델명 등) 설명서
- ⑧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제조업체의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
- ⑨ 제품 KC인증서, 형식승인인증서(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) 등 충전기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
- ⑩ OCA에서 발급하는 OCPP1.6 인증서(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, 충전기 Subset Certificate)
- ⑪ 전담인력(H/W 부문, S/W 부문, A/S 부문) 재직·경력증명서, 보유자격증, 4대보험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
- ⑫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 여부 증빙자료(위탁운영시 계약서 사본(원본대조필, 인감날인), 직접 운영시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(경력)증명서, 4대보험 납입증명서)
- ⑬ 기타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정성·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

※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「2022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」 참고

8. 문의처

○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부 함유선 주임 (☎ 032-590-3692,3682,5108)